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年 8月

석사학위논문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추 현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ts in China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추 현

#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진숙

이 논문 사회복지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추현

# 추 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인)

2010년 5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 1 장 서론</b>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b>제 2 장 이론적 배경</b> .....	5
제 1 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5
1. 개념 .....	5
2. 성격 .....	6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 .....	7
1. 영미법계 .....	7
2. 대륙법계 .....	9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 .....	11
1. 지도·상담 및 감독 업무 .....	11
2. 원호업무 .....	11
3.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	12
4. 조사업무 .....	12
제4절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 .....	12
1.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	12
2.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 .....	15
<b>제 3 장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동향</b> .....	18

제 1 절 영미법계 .....	18
1. 영국 .....	18
2. 미국 .....	19
제 2 절 대륙법계 .....	21
1. 독일 .....	21
2. 일본 .....	22
제 3 절 한국 .....	23
1. 연혁 .....	24
2. 보호관찰 관련 법률 .....	24
3. 보호관찰조직 .....	25
4. 보호관찰 실시 .....	26
5. 프로그램차원 .....	29
제 4 절 시사점 .....	33
1.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실시사건에 의한 평가 .....	33
2. 재범률에 의한 평가 .....	36
3. 시사점 .....	37
<b>제 4 장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b>	<b>39</b>
제 1 절 현황 .....	39
1. 법제도 .....	39
2. 운영측면 .....	42
제 2 절 문제점 .....	44
1. 법제도 문제점 .....	44
2. 운영측면 문제점 .....	45
<b>제 5 장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방안 .....</b>	<b>48</b>
제 1 절 법제도 .....	48
제 2 절 운영측면 .....	50

<b>제6장 결론 및 제언</b> .....	55
제 1 절 요약 .....	55
제 1 절 시사점 .....	56
1.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	56
2. 프로그램차원에서의 개선방안 .....	57
3. 본연구의 제한점 .....	58

##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1> 영국보호관찰담당인력 현황 .....	19
<표 2> 미국 지역교정 대상자 추이 .....	20
<표 3> 주요한 주의 보호관찰인력 .....	21
<표 4> 일본보호관찰대상자수 .....	23
<표 5> 보호관찰소 직제 및 구성 .....	24
<표 6>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	27
<표 7> 사회봉사명령 대상 및 기간 .....	31
<표 8> 수강명령 대상 및 기간 .....	36
<표 9> 소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 유형별 실시사건 .....	31
<표 10> 보호관찰 종류 후(2년) 재범여부 .....	36
<표 11> 재범분포에 따른 빈도 .....	36
<표 12> 소년범죄자 및 재범 현황 .....	37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ts in China

ZouXian

Advisor : Prof. Kim, Jin-sook,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roblem of the juvenile delinquency are more becoming ferocity, systematization and sophisticated forms day by day in China. Juvenile delinquency problem has been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 common drug problem has become the China's three major pollution problems. And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increase of juvenile second offender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notions and "defense"light"education" not focusing on the perpetrators of particularly young people who have run afoul of the law to protect the social return, the resumption of correction, with the result that recidivism, recidivism phenomena exist in large numbers.

In order to resolve the juvenile delinquency questions of China to explore a solution. Ideas and learn from the advanced system, in light of China's actual situation, to create scientific, humanity's illegal juvenile's correctional system. My basic philosophy is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education first, punishment second," "education, probation, saving". The system with the idea of protecting Juvenile have a natural consistency. So the delinquent juveniles should be protected when the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dealt with these cases. It is easy

to make them into a worse plight because the system of the juvenile justice is too simple. In order to rectify the delinquent juveniles and orientate them towards the healthy life the paper tries to analyze the limitations from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in China. Action to protect democracy and the intrinsic nature of the venial and juvenile delinquency is a natural counterpart, and the development of juvenile just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therefore, establishment of a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s protection and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correction will have historic significance.

The probation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ts, therefore, is in accord with the ideology of juvenile justice.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aims to bring up the juvenile delinquents soundly by correcting the soundings of delinquent juveniles which could be harmful for them. The probation system is about how to treat juvenile delinquents effectively so that it can be the best way to lead them to the right way of their lives if it is carried out in the protective and educational manner. So we can learn from it connected to the reform or improvement of the probation system in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ina. At the same time the paper focus on the system of Probation in Korea which had carry out it for 20years with excellent results.

The author introduced the system of Probation in Korea from the policy and program. In addition to give the diagrams to analyze the excellent results. As a student of social welfare, the author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 of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wanted to find the system or program that could be rectify the system of the delinquent juvenile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사회경제가 급격히 발전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중국의 청소년범죄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범죄연령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청소년 연구중심"<sup>1)</sup>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중국의 청소년<sup>2)</sup> 범죄는 68%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sup>3)</sup>의 범죄만 아니라 발달연령이 앞당겨지고 폭력의 영향을 받은 이유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사회를 위해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마약문제 및 환경오염문제와 더불어 중국사회의 3대공해 중 하나로 발전되었고 중국사회에서 경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삼협만보 외, 2008).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집단범죄의 증가, 지능화, 성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폭력행위의 격화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야만하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한다(曾燕波, 1997).

그러나 이와같이 청소년의 범죄가 심각해 짐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대중매체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張偉, 2009), 우발적 범죄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는 정신과 신체의 변화에 대한 통제력의 부족, 더 나아가서는 인지능력의 부족과도 연관되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즉흥적인 행동이 우발적인 범죄로 연결된다고 보았다(김순자, 2008).

청소년은 국가 미래의 희망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책임질 주인공이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을 유효하게 방지해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인 범죄와 구분하여 처우해야 할 것이다.

- 
- 1) "중국청소년 연구중심"영어 명칭: "China Youth & Children Research Center", 약어: "CYCRC". 1991년 7월에 성립하고 국가 중앙 속의 사업단위 이다.
  - 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는公安기관 표준에 따라서 나이가 13세부터 25세까지의 공민이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 3)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에 따라 18세 미만의 공민이 미성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법과 제도는 변해가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범죄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있는 「미성년인보호법」(중국 제7차 전국인대상우위원회, 1991) 및 「예방 미성년인범죄법」(중국 제9차 전국인대상우위원회, 1996)을 공포한 지 오래 되었지만 이 두 법률은 구체적인 운용성이 결여되었으며, 집행하는 주체 및 책임이 불분명하고 연관된 부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미성년 범죄의 처우규정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인보호법」 및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들과 조약(條約)들에 분산되어 있어 미성년인에게만 적용하는 법률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성년인의 죄를 판결 및 처벌할 때 성년인과 같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규정은 중국 「형법」에 명확하지 않고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서 적용이 어렵다(康均心·李娜, 2005).

또한 미성년인 범죄에 대하여 강한 징벌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안(公安)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까지도 소년에게 신체의 자유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중 심각한 것은 중국의 소년교양<sup>4)</sup> 집행 장소가 매우 규범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감금하지 않은 범죄청소년<sup>5)</sup>에게 적용하는 조치는 교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尤麗娜, 2006; 劉勇, 2007). 이와 같이 중국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리원칙은 있지만 처리제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할 필요성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처우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행청소년 처리원칙에 있어 서방 국가에서는 "비범죄화(聶穎, 2005)" 및 "비형벌화(大谷實, 2000)" 위주의 양형정책 및 행형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중경경(重重輕輕)"의 양극화 형사정책을 나타낸 것이다(鄒金泰, 2008). 즉 위급한 범죄 특히 폭력형, 공포형 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형벌의 양형을 높이고 경미한 범죄 혹은 마땅히 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범죄에 대하여 가능한 비범죄화, 경형화(輕刑化) 혹은 비형벌화 처우가 되도록 한다. 위급한 범죄에 대하여 "중중(重重)"주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초범, 우범, 과실범 및 경미범죄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와 지방형법은 가능한 인도주의 비형벌화 처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처우제도에 있어 보호관찰제도는 사회에서의 자유로운

4) 한국의 소년원같은 구금시설이다

5) 「中华人民共和国刑法」의 제17조의 규정: 범죄시 16세 미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의 부모가 혹은 감호자가 가르치길 원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

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가 범죄소년을 적극적으로 감독, 원호함으로서 문제의 개선, 교화 및 재활을 도모하다는 점에서 사회내처우의 중심이 되는 제도이다. 특히,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는 비감금 및 사회화처우를 기본이념을 위주로 운영되어 여러 서방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보호관찰 제도는 도입한지 20년이 되었고 지난 20년 간 한국의 보호관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창한, 2009).

따라서 본 논문은 비행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비행소년 관련처우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한국의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즉, 보호관찰제도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발전하여 왔고, 비행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운용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의미는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중국의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재활에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처음으로 살펴보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실천현장에서 청소년범죄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회내 처우의 중요성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법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국 비행청소년 관련제도를 중국 소년사법제도, 미성년범죄형벌제도, 집행유예와 가석제도, 사회내처우제도 등에 대해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 운영측면에서는 소년법정, 미성년자 수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토대를 이루었다. 참고한 문헌으로는 한국 문헌, 한국 법무부통계자료, 전주보호관찰소 자료 등이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초이론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기능과 주 업

무내용에 대한 개관 등을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외국의 보호관찰의 동향과 한국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중국의 보호관찰 관련제도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법제도 측면, 운영 측면과 보호관찰의 내용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제3장에서 고찰한 점에 따라 중국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제 6 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수용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시되어진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지정된 보호관찰담당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개선, 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이태언·신석환, 2005). 이 개념은 보호관찰에서의 진단, 치료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개념에서 유래하며, 보호관찰의 담당자는 상담자로서 범죄인을 감독,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인정되고 있는 보호관찰의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지도·감독과 원호의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지도·감독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항상 그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를 살피며, 필요한 경우 지시와 통제를 가하여 대상자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호는 감독과는 달리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박종철, 2007).

이를 분석하면 첫째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둘째, 보호관찰제도는 형벌의 유예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을 본질적 특색의 하나로 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제도의 또 하나의 본질적 징표는 대상자에 대한 감독과 원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용우, 1988).

임성근은 이 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는 사회 내 교정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일컬어 "Community - based Corrections " 라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교정정책이 응보주의에 입각하여 시설내처우를 주로 해왔던 전통적인 행형제도를 탈피하고, 법조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



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처우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은 외형상으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처럼 행하여지지만 형의 유예의 조건이 아니고 범죄자, 비행자에 대한 「독립한 처우 방법」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 형벌이 아닌 비행벌적 처분으로 개념 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은 처분전이나 처분후의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정사업가인 보호관찰은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인성발달에 대한 이해에 보다 노력하게 되며, 그리하여 이들은 보호관찰 하에 있는 범법자들이 지역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넷째, 보호관찰은 진단, 치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담당자의 감독, 감시, 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재복귀시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정의 모형에 따른 보호관찰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보호관찰을 통해 범죄인의 행동양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디까지나 보호관찰의 주목적은 침해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률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법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 2.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보안처분제도와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의 성격과 한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매우 다양하다. 보호관찰은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두 제도는 연혁적인 면이나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와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의 성격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중에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등에 의한 원조·지도·감독 등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부형의 유예를 말한다(윤재복, 2007).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Abadinsky, 1999) ① 보호관찰이 법원에 의한 형의 유예에 불과하다는 법률의 처분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법관의 재판에 의한 조건부 특권을 누린다는 은사설 ③ 보호관찰은 일종의 형벌이고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재소자(quasi-prisoner)라고 하는 형벌설 ④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한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계약설 ⑤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하나의 행정과정이라는 설 ⑥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사회사업의 기초 위에서 행하는 치료수단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의 처분설 ⑦ 사회사업의 처분의 성격과 행정과정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복합설 ⑧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보안처분설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사업설이 다수설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안처분설이 유력하다고 한다(이정주, 2007).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는 자유형 또는 보안처분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교정처우를 받고 있던 자를 가석방·가퇴원시킬 때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등에 의한 원조·지도·감독 등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보호관찰부 가석방·가퇴원을 말한다.

가석방의 권리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범집행자의 시혜에서 나오는 특권이거나 특전이라는 은사(특권)설, ② 가석방 대상자가 가석방 조건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에 따라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계약(동의)설, ③ 가석방은 법적으로 구금이며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 집행기관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고 보는 구금(관리)설, ④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가석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친적 관점에서 시행하는 보호처분으로 보는 국친설, ⑤ 대상자가 사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권리 또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권리설 등이 있다(윤재복, 2007).

##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

### 1. 영미법계

보호관찰제도의 기원은 영미의 보호관찰(Probation)제도 이다(신창언, 1979). 이

보호관찰제도는 처벌을 유예하고 유죄가 인정된 행위자를 일정한 기간동안 보호관찰하에 두는 제도를 의미하며 실험기간동안 선행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제재가 선고된다. 이것은 소년법의 기본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교육이 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김용우, 1988).

## 가.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영국 보호관찰제도의 기원은 영국의 보통법상 관행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서 부터 라고 본다. 영국의 보호관찰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820년경 영국의 욕크(York State)의 사계법원(Warwickshir Quarter Session)판사들이 소년 범죄인에 대하여 필요시 단 하루만 구금하고 그들의 부모에게 인계 위탁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명하는 방법을 사용한데서부터 비롯된다(Tunasbeff, 1971). 1925년의 형사제판법(Criminal Justice Act)은 제1부에 Probation officer, probation지역(Probation area) 및 연합지역을 두기로 하고 보호관찰 관리조직에 관한 규정을 하였다. 이 형사제판법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소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보호관찰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며 피고인은 일정한 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에 놓이게 되고 법원에 의하여 부여된 지시와 업무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 후 1948년에 개정된 형사제판법에서도 미국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찰제도를 대폭 도입하여 판결전조차제도. Case Work의 인 감독과 보호, 원호, 보호관찰기간, 보호관찰의 취소와 해제 등을 정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의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의 완성을 이루고 영국 형사정책의 불가결한 한부분이 되었던 것이다(한강택, 1994).

## 나. 미국의 보호관찰

형의 선고유예 및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유권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호관찰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민간인에 의한 보호관찰이 실시되었는데 그 선구자가 John Augustus(1785-1859)이다(허완, 2001). 그는 최초로 보호관찰(Prob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Case Work의 방법을 첨

가하여 현대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유형을 완성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대처(Peter Oxenbridge Thacher)판사, 해스킨(G. F. Haskin)신부, 쿡크(Rufus. R. Cook)판사 등의 의하여 더욱 발전하여 19세기말에 이르러 입법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보호관찰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한 것은 1878년의 Massachusetts State에서이다. 미국의 법제도상 보호관찰(Probation)이라는 용어를 채용한 것도 Massachusetts State 법으로서 동법은 오늘날 보호관찰 제도가 가져야 할 제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대헌장(Magna Charta)이라고도 한다. 그 후 1880년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규정하고 Probation 과 Parole을 통합 실시하는 최초의 제도가 성립된 것이다(허완, 2001). 1897년의 「미조리」 주를 비롯하여 1957년의 「뉴멕시코」 주법에 이르기까지 48개주에서 입법이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1899년의 「일리노이즈」 주법(The Act to Regulate the Treatment and Control of Dependant, Neglected and Delinquent Children, Law of Illinois)이 유명한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이다. 이 법은 소년에 대한 특별처우를 위하여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규정하고 「시카고」에 최초의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및 과학적인 처우를 하게된 전기를 이루어 놓았다(김웅겸, 2002).

## 2. 대륙법계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와는 달리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는 분리되어 생성, 발달한 것이다. 영미법계국가 보다 보호관찰제도 실시가 늦어 졌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럽에서 먼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형의 집행유예에 결부된 조건부 유죄판결제도(Bendinge Schuldigen)를 원형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었다. 대륙에 있어서의 조건부 판결은 1888년의 벨기에와 1891년 프랑스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벨기에, 프랑스식 조건부 판결인 Sursis제도는 전통적인 응보형사상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보다 중요한 결과를 위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며 이 Sursis제도는 노르웨, 스위스, 독일의 순으로 적용되었다(김영은, 1988).

## 가.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독일에서는 직접적으로 보호관찰제도를 채용함에 어려움이 있었다(한강택, 1994). 독일은 1911년 형법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법제상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독일에서는 프랑스벨기에의 형집행유예제도와는 달리 조건부특사제도의 형태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었다. 독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22년 「소년복지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소년범죄의 경우 심신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허완, 2001).

그리고 1953년의 제3차 형사법개정법률의 제37조 이하에는 서험적 형벌의 연기(형의 집행유예)를 규정했고, 제26조에서는 가석방을 규정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영국의 보호관찰제도에 매우 유사하게 되었다. 1956년의 형법초안에서는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제도와 보안관찰이라는 2종의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전자는 1953년 개정형법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와 비슷하고, 후자는 경찰감시가 특정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행위자의 개선이나 사회복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아 소년법원법 제9조 제2항의 내용인 보호관찰 사항을 성인범죄의 경우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 후 1962년 경찰관찰은 보안관찰제도가 규정되었던 것을 1975년 제12차 형법 개정법률에서는 보안관찰을 지도관찰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고 보호관찰이 적극적으로 지도와 원호에 중점을 두게 되어 영미형의 보호관찰과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조준현, 1993).

## 나.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일본은 대륙법계국가의 영향을 받아 1905년 처음으로 「노르웨이」법을 원형으로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은 1908년 신형법에 계수되어 형사법상 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

그 후 미국의 소년법원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2년에 「소년법」을 제정하면서 보호관찰규정을 설정하고 집행유예 등에 부하여지는 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소년보호사의 보호감독 하에 두도록 하였다. 1936년 「사상법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유예자, 만기석방자, 가석방자, 기소유예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군국주의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탄압방법으로 이용되었으

므로 본래적 의미의 보호관찰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차정일, 1986). 결국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1945년에 폐지되었다(김용우, 1988).

2차대전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49년 「범죄자예방갱생법」이 제정되면서 협의의 갱생보호제도와 함께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다. 전면적인 입법은 1954년의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으로서 이에 의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가 그 법의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1972년 「개정형법초안」에서는 선고유예제도의 채용과 더불어 보호관찰제도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는 등 점차 영미형 보호관찰제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허완, 2001).

### 제 3 절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

보호관찰의 주 업무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연구(한풍남,2009)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1. 지도 · 상담 및 감독 업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업무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범죄학, 행형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분류 하여 대상자별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보호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의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며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이행을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호관찰의 지도 · 감독은 출석지도 · 감독, 비대면 지도 · 감독 및 현지방문 감독, 야간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 2. 원호업무

한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성행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환경개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제원조의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원호를 실시한다. 제35조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가 부상, 질병 등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이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다.

### **3. 사회봉사 · 수강명령집행**

한국형법(제62조의 2), 소년법(제32조, 제33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 제41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5조)등에 의하여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부과된다.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4. 조사업무**

조사업무는 한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판결전조사, 한국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에 의한 결정전 조사, 한국소년법(제12조)에 의한 결정전조사, 동법(제49조의2)에 의한 검사의 결정전조사, 한국특정성폭력범죄자에위치추적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검사의 청구전조사, 동법(제28조)에 의한 법관의 판결전조사, 한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한 환경조사, 동법(제28조)에 의한 보호관찰사안조사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 4 절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

### **1. 보호관찰제도의 목적과 기능**

#### **가.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경미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범죄유전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낙인의 오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범죄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수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용시설의 과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가석방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원혜욱, 2009).

## 나.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 1) 범죄통제

보호관찰은 범죄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재범을 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보호관찰은 감독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범죄의 예방을 추구한다(박종철, 2007).

### 2) 지역사회 재통합

보호관찰은 시설내 처우와는 달리 범죄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찾고 이를 수행하며, 그들의 피부양자를 조격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 준다. 그들은 자신의 감독비용의 일부를 갚거나, 피해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직업, 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박종철, 2007). 그러한 점에서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사회와 재통합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3) 처벌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보호관찰은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양형이며, 범죄인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여러 조건과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규칙과 행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다(원혜옥, 2009). 보호관찰대상자들은 항상 영장 없는 수색 및 체포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은 엄격한 보호관찰 프로그램 요건과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 같은 요건 또는 조건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자신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호관찰은 처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이성철, 2002).

### 4) 치료 및 보지기능

범죄행위는 개인적 결점이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범죄성이 심리적, 외부적으로 표출(表出)된 것이고 그 범죄를 예방,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치료 또는 교화하는 것이라고 한다(송광섭, 1996). 이러한 치료기능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성의식이 왜곡된 성폭력 범죄자들, 가정폭력 범죄자들에게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치료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죄원인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기술과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또한 보호관찰은 복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의 복지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데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범죄인에게 자주·자립의 의지와 갱생의욕을 고취시키고 환경을 조정·개선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보호관찰은 복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한풍남, 2009).

### 5) 억제

보호관찰은 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그들은 개별 또는 집단요법, 혹은 카운슬링과 같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에 범죄자들이 참여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서 범죄자들의 개선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상자의 범죄를 체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박종철, 2007).

## 2.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

### 가. 사회의 가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호관찰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감독'과 '원호'라는 2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책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회의 지원이 범죄에 대한 제재와 결합되어 범죄자에게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한편으로는 복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진정한 교정, 교화, 개선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 인격의식을 진일보 불러일으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에 의거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의 대책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확대되고 범죄교육학의 요소가 현저히 강조되며 사회의 지원이 실행되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사회적응 가능성을 일깨워 주고 사회에 대한 뉴대관계를 갖게 하며 사회의 사명감을 인식시켜준다. 그리고 범죄자의 생활조건과 주변환경 등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실제적인 갱신복귀를 가능하게 하며 범죄자로 하여금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토록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인대상자의 약 40%에 벌금이나 배상금을 보호관찰제도에 투입하도록 명하고 있다(정주영, 1988).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 나. 재범죄억제의 가치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희생적인 노력에 힘입어 보호관찰기간 동안 재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재범죄률의 감소와 더불어 잇따르는 사회방어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음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런데 보호관찰제도의 실용적인 가치는 이를 실제로 실행한 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평가되어 조건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되면 성공한 경우로 본다. 미국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성공도는 60~90%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1954년 UN에서 성인의 남자 24,500명과 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자 86.6%, 여자 92.8%가 재수감 됨이 없이 기간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한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년범죄자중에

서 중한 범죄자를 제외하고 5년뒤 소년원에 갇혔던 사람의 재범죄율은 52%, 보호관찰에 응한 자 중에서는 28%만이 재범죄하였다고 한다(정주영, 1988). 따라서 재범죄 억제에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교도소에 갇혀있는 경우에 비하여 재범죄하지않는 비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없다. 다만 여기에 전면적인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 다. 형사제도에 가치

보호관찰제도의 가치를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이라는 안전막이 있으므로 위조된 석방, 위조된 퇴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자유형사처벌의 폐단을 절제하고 범죄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무기력과 자학행위를 제거하고 갱신의욕을 불러이르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극소화할 수 있다. 1978년말에서 부터 현재까지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평균 3.4로서 이는 과밀도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바 보호관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그와 같은 과밀도현상은 능히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시정한 제도라 할 지라도 사회내에서 적당한 지도와 생활조건을 조성하여 주지 않는 채 방치해 둔다면 그 재범죄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할 것이다(정주영, 1988). 위와 같은 면에서 보호관찰제도는 그 형사를 행사하는 제도면에서의 가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라. 재정적 가치

유능한 보호관찰관을 채용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설내에서 수용하는 데 드는 경비의 약 10내지 15분의 1정도라고 하니 재정면에서의 경비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제도가 구속시설내에서의 처리방법에 비하여 약 10분의 1 정도의 예산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각국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제도는 그 운영면에서 국가의 경제절약이라는 또하나의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중국의 경우 소년보육원에서 수요되는 1인당 연간수용비용은 약 4만원이고 보호관찰시 수요되는 비용은 연간 13,000원으로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연간 27,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볼 때 보호관찰제도는 재정면에서의 가치가 있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제도의 전면도입이 필요할 것이다(정주영, 1988).

## 제3장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동향

### 제 1 절 영미법계

#### 1. 영국

##### 가. 영국 보호관찰의 특징

영국은 보호관찰업무 관장기관은 내무성(Home Office)의 형사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위원회이며, 이들 위원회의 책임하에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대상자가 주류이다. 영국 보호관찰의 특징은 사회봉사 명령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16세 이상의 소년과 성인에게 부과 가능한 사회봉사명령이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폭넓게 선고되고 있고 판결전조사보고서가 재판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는 법원내 위치하여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판결전조사보고서가 직접 재판에 활용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고, 가석방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 보호관찰교육센터, 집단교육전담보호관찰소 등으로 구별하여 각 대상자별 전문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명은, 2008).

##### 나. 영국 보호관찰조직과 인력

영국 보호관찰조직의 변화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2001년에는 영국 보호관찰국(National Probation Service for England & Wales)이 설립되었고 기존의 54개의 보호관찰구역이 42개로 줄어들었다. 각각의 관할 구역은 그 지역의 보호관찰위원회(Probation board)에 의해서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호관찰위원회는 갱생보호사업에 경험이 많은 치안관사들로 구성되며, 보호관찰기관은 이 위원회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보호관찰위원회는 보호관찰관을 임명하고, 급료를 지급하며, 경비를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호관찰관은 27세 이하로 사회사업가 자격증이 있

어야 하며, 담당업무는 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보호관찰대상자에 감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가석방자에 대한 감독,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자원봉사자의 관리 등 다양하다. 2004년 말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85,828명,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 83,408명 등 총 169,236명이고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7,326명, 수강명령대상자 28,112명, 일반판결전조사자 202,757명, 약식판결전조사자 43,296명등 판결전조사자는 246,053명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대상자를 해당분야 담당인력의 수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담당사건량을 계산하였다(한풍남, 2009).

<표 1> 영국보호관찰담당인력 현황

(단위:명,%)

구 분	지원업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총 계
인 력	5,315	7,232	1,823	1,142	1,771	17,283
비 율	30.7	41.8	10.6	6.6	10.3	100

<출처: 2007보호관찰조직진단및합리적인력운용방안에대한 연구>

## 2. 미국

### 가. 미국보호관찰의 특징

미국 보호관찰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판결전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험한 혹은 부적응된 행동을 보일 확률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위한 여러 분류방법들이 고안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민간봉사자의 역할이 고도로 세분화된다. 다른 특징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 처우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집중감독, 가택구금, 전자감시, 주간보고센터, 마약치료센터, 병영훈련프로그램(Boot Camp),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밀착감시 감독을 실시하는 집중보호관찰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이명은, 2008).

## 나. 미국 보호관찰조직과 인력

보호관찰의 집행기관은 주와 법원의 관할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다. 어떤 주는 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각 지역에 완전히 분산된 지휘체계 또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지휘체제로 보호관찰을 운영하고 있다(윤재복, 2007).

보호관찰소에는 Probation 사무소, Parole 사무소, Probation · Parole 사무소등을 포함하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Probation 사무소는 미국 전역에 1,321개 사무소가 있으며 그 중 연방사무소가 511개소로 가장 많으며 Georgia주가 124개소 Texas주에 122개소, Massachusetts주에 107개소 등 각주마다 사무소가 있다. Parole 사무소는 미국 전역에 485개 사무소가 있다. California주가 가장 많은 136개 사무소가 있으며 Texas주에 72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방 사무소는 연방 가석방위원회라는 단 하나의 사무소만을 두고 있다. Probation · Parole 사무소는 1,239개 사무소가 있다. Florida주가 165개 사무소로 가장 많은 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Wisconsin주가 104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방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박경래, 2007).

2002년 현재 미국의 보호관찰관은 78,99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호관찰 관련 인력 중 62.1%는 보호관찰관이고 11.4%는 행정직 간부이며 26%는 사무직을 포함한 행정보조요원이다. 미국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2001년에 5,271,069명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5,546,944명으로 증가하여 약 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풍남, 2009).

<표 2>미국 지역교정 대상자 추이

(단위:명)

연 도	지역교정			
	계	성인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일반보호관찰 (Probation)	가석방보호관찰 (Parole)	
2001	5,271,069	3,931,731	732,333	607,005
2002	5,376,948	4,024,067	750,934	601,947
2003	5,446,783	4,073,987	774,588	598,208
2004	5,517,218	4,143,466	771,852	601,900
2005	5,546,944	4,162,536	784,408	601,000

<출처: 2009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 2 절 대륙법계

### 1. 독일

#### 가.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특징

독일에서는 1953년 외국제도의 선례에 따라 소년재판법(Jugend Gerichtsgesetz) 및 형법(Strafgesetz)에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년재판법은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경우에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성인에 대한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경우에 법관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지시(Weisung)의 하나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다(이명은, 2008).

#### 나. 독일 보호관찰조직과 인력

독일 보호관찰조직과 관련하여 함부르크 주에서만 예외적으로 사회부 관청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부서는 지방법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사법체계상 각주의 법무부내에 주접원이 소속되어 있으므로 보호관찰조직이 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은 곧 법무부 소속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보호관찰조직은 각주의 관할 사항이므로 인력에 대한 내용도 각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3> 주요한 주의 보호관찰인력

(2001년 기준, 명)

구 분	보호관찰직원수	보호관찰대상자수	직원1인당 대상자수	보호관찰소수
헤센주	168	11,616	69.1	20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50	21,487	85.9	46
라인란트팔츠주	102	9,519	93.3	10

<출처: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조직 및 인력의 운용실태>



2001년 현재 보호관찰대상자 약 70,000명이고 보호관찰관은 약1,300명인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보호관찰에만 종사하는 최일선의 보호관찰관은 약 700명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약 100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한풍남, 2009).

## 2. 일본

### 가. 일본 보호관찰제도의 특징

일본의 보호관찰은 미국, 영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재판소 보호관찰명령자,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 부녀보호소 가퇴원자, 가석방자로 우리와 유사하나 대체형벌로서의 의미보다는 갱생보호개념의 원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일본 보호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사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의 주요임무가 보호사와 대상자간의 실질적 보호관찰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보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또한 다양한 보호관찰을 적정·효율적으로 처우하기 위하여, 처우 난이도에 의해 분류하는 '분류처우제'와 보호관찰을 문제군별로 유형화하는 '유형화처우제'가 도입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재판단계에서 영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전조사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명은, 2008).

### 나. 보호관찰조직과 인력

일본의 보호관찰조직에는 중앙조직과 실무조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앙조직인 법무성은 보호관찰에 관한 중앙관청으로 보호관찰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보호관찰실시와 관련하여 법무성에 보호국을 두고 보호국을 두고 보호국 산하에 총무과, 갱생보호진흥과, 관찰과, 은사과 등을 설치하고 참사관이라는 특수 전문직을 두어 범죄자 및 갱생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대신의 부속기관으로 중앙갱생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보호관찰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회는 독립적 성격의 기관이다. 실무조직에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있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는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에 8개청을 두고 있고 3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가석방의 취소에 관한 결정, 부정기 형에서 석방처분의 결정, 가퇴원 및 퇴원의 허가,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감독, 가타 법률이 정하는 사무의 처리 등이다. 2002년 현재 보호관찰소는 53개청이 있으며 지부는 3개청, 주재관 사무속 27개청이 있다. 보호관찰소에는 1,089명이 근무하고 있다(한풍남, 2009).

<표 4>일본보호관찰대상자수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일반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자	제재조치	합계
대상자	45,472	14,068	192	59,732
비율	76.1	23.6	0.3	100

<출처:2007 보호관찰조직 및 합리적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

2005년 현재 일반보호관찰대상자가 45,472명,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 14,068명이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보호관찰관이 구인·유치 등을 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직원 1,169명만으로 계산하였다. 이 가운데 소장과 과장과 같은 관리직 239명과 사회복지조정관 70명을 합한 309명은 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나뉘는 860명이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업무부담량은 69.2명에 해당한다(한풍남, 2009).

### 제 3 절 한국

보호관찰의 사전적 의미는 양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이다. 즉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구금시설 착안에서 수용·처벌하는 대신 일정기간 범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전

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의 개별적 지도, 감독, 원호를 받게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찰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회복귀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배종대, 2003)

## 1. 연혁

보호관찰은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제도이다. 한국이 본래적 의미의 유권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된 것은 1981년 법무부에 보호국이 설치된 후 1982년 보호관찰제도 도입연구반을 편성하고 1983년 1월 27일 훈령으로 보호관찰시험 실시 지침을 마련, 시행한데서 비롯된다.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1983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1984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1985년에는 가퇴원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고 1988년 말까지 총 13,112명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시험실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우선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성인 범죄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25일 사회보호법의 개정으로 보호감호 가출소자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4년 4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인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을 확대하였다.

특히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형법(법률 제5057호)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선고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동법 제62조의 2)과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동법 73조의 2)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성인범을 포함한 전체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운용의 기틀을 완비하게 되었다.

## 2. 보호관찰 관련 법률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기본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에 관하여 일반법이 갖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 보호관찰법(1988)에 대한 기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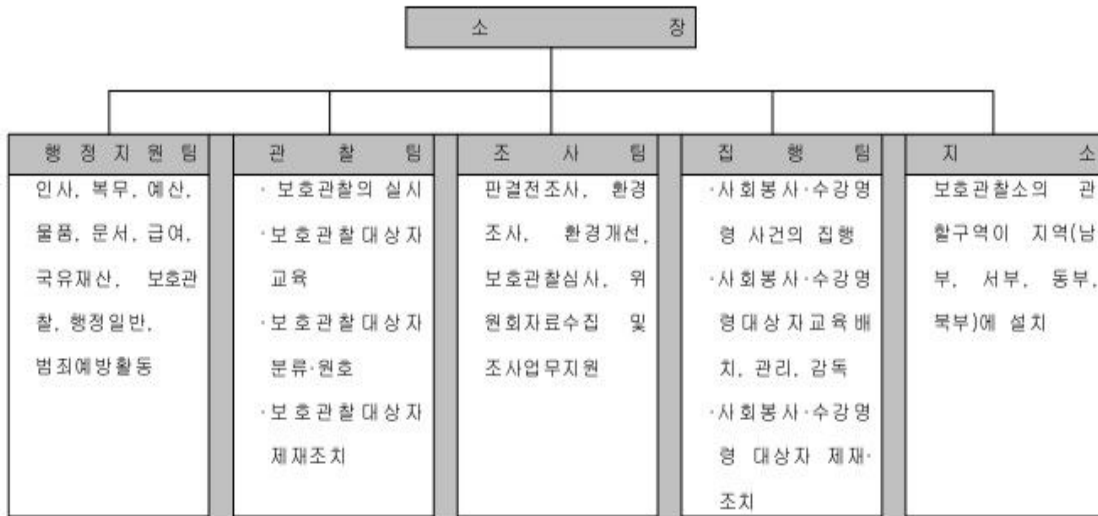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규범성의 형법의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선고유예나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특례규정,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은 형사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범죄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내처우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이 사회복지실현을 도모하는 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호관찰의 실제에 있어서 범죄인에 대한 환경조사 및 개선 활동이나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개로 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지도, 위기대처능력 함양, 원호 및 응급구호 등은 사실상 개인 및 공공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인의 재범예방활동이나 개인 및 사회공공복지가 동법에 근거한 국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보호관찰 기관의 조직, 설치, 보호관찰 업무 처리전반에 걸쳐 규정하는 것을 감안 할 때, 동법은 사회복지법적 성격과 행정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89년 5월에 보호관찰소 직제도 공포되었다(신석환, 2009).

### 3. 보호관찰조직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관한 실재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한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은 1989년5월 보호관찰소 직제에 의하여 공포되어, 1989년7월1일 각소가 개청되었으며, 그 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지소가 증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호관찰행정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전국 대도시마다 보호관찰소 및 지소를 설치하여 2008년1월1일에 16개보호관찰소 및 28개지소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대표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의 조직과 기능 및 각 기관별 팀별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5>보호관찰소 직제 및 구성



<출처: 법무부 보호국 자료>

주: 수원, 부산, 보호관찰소에는 행정지원팀, 조사팀, 관찰팀, 집행팀, 대구, 인천, 광주, 제천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팀, 조사팀, 관찰팀, 집행팀이 청주, 창원, 전주보호관찰소에는 행정지원팀, 관찰팀이 설치되어 있음.

팀장의 직급은 보호관찰서기관 또는 보호관찰사무관으로 하고, 기본운영 방향은 팀간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을 통하여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역량의 극대화, 팀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지는 보호관찰 행정 구현, 수평적 팀 운영을 구성원의 참여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관찰팀, 집행팀으로만 설치된 기관은 관찰팀이 행정지원팀 및 조사팀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찰팀은 지역별로 평성하되 팀간 대상자 및 직원의 수는 가급적 편차가 없도록 편성하였다.

보호관찰소는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의 집행
- ② 갹생보호의 실시
- ③ 검사가 보호관찰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실시
- ④ 제8조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⑤ 범죄예방활동

## 4. 보호관찰 업무의 실제

### 가. 보호관찰 실시

#### 1) 보호관찰 개시와 종료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 혹은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된 때로부터 개시되며 보호관찰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최옥채, 2000).

한편 보호관찰은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의 경과, 보호관찰 조건부 형의 선고 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출소 또는 가종료 결정의 최소가 있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종료하게 된다.

#### 2)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표 6> 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부과근거	대상 → 보호관찰기간
형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 1년</li> <li>●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 유예기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li> <li>● 가석방된 자 → 잔형기간</li> </ul>
소년법 (2008년 6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자 → 1년</li> <li>● 장기보호관찰을 받은 자 → 2년(처분변경시 최대 1년 연장 가능)</li> <li>● 임시퇴원자 → 6월-2년</li> </ul>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 6월 이내(처분변경시 최대 1년 이내)</li> </ul>
성매매알선 등 행위벌 처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 6월 이내(처분변경시 최대 1년 이내)</li> </ul>
(구)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소·가종료자 → 3년</li> </ul>
법무부 훈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 6월 또는 1년</li> </ul>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

### 3)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법정·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에 의하며 법정준수사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신고 의무 한다.

특별준수사항은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외출 제한, 유흥가 출입금지, 금주, 약물 사용 금지 등을 부과한다.

### 4) 판결전조사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개개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방법을 결정,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해당 범죄는 물론 피고인의 성격, 환경, 경력, 전과 관계 등 인격과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판결전조사의 기능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고자료 과 범죄인의 개별적 처우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한다.

조사내용은 ①범죄및 비행력 ② 가족, 학교, 주위환경, 직업, 재산 등에 관련사항 ③ 신체 및 정신의 발육상태, 성격 ④ 범행동기 ⑤ 피해회복 여부다.

조사방법은 면접·방문조사, 심리검사(MMPI-2등), 자료부석과 사실확인조회 있다.

## 나. 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위원의 의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경제정지원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해촉하는 범죄예방활동 분야의 민간자원봉사자이다.

범죄예방위원의 자격은 ①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 ②사회봉사에 대한 연의를 가진 자 ③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은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보조 등 활동 한다.

## 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아래에 설치하고 있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인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보호관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 위원 중 3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참여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상임, 비상임 모두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을 임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사항은 수형자의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소년원생의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지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등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모든 심사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신청에 의한 심사결정이나 직권에 의한 결정을 막론하고 가석방에 한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계적 결정기능과 그의 소관 심사사항을 전권으로 결정하는 최종적 결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 5. 프로그램차원

### 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1)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지도·감독의 차별화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를 일반관



리대상자·주요관리대상자·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하여 지도·감독의 횟수와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한다.

2) 집중보호관찰의 실시-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호관찰성적이 불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여 수시 현장(가정·직장 등) 방문 밀착지도, 불시 동태점검 등 일반관리대상자에 비해 3-4배 강화된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한다.

3)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으로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사범 등 특정시간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상자의 재택(在宅) 여부를 확인·감독한다.

## 나. 원호

원호 의의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시 범죄에 빠져들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지장과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등 자립갱생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다. 제재조치

제재조치 중 경고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면 형의 집행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불응,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을 받아 48시간 이내 구치소, 교도소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한다. 긴급을 요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영장 없이 대상자를 구인하고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구인이 있다. 구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간 수용기관에 유치하는 제재조치가 있다.

## 라. 사회봉사명령

### 1) 사회봉사명령제도 개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속죄(expiation), 지역사회에 대한 배상(reparation), 형사처벌(punishment), 사회복귀 또는 교정(rehabilitation)의 실현에 중점이다. 1970년 영국에서 단기구금형 대체수단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에 규정, 시범실시 후 1979년 전국 확대실시 되었다.

### 2) 사회봉사명령 대상 및 기간

<표 7> 사회봉사명령 대상 및 기간

근거법률	명령시간	집행근거
형법	500시간 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시간 내	
소년법 (2008년 6월 시행)	100시간 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200시간 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200시간 내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 2009>

### 3) 사회봉사명령 집행방식 및 분야

#### (1) 사회봉사명령 탄력 집행

평일, 주간1일9시간 집행이 원칙이지만,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따른 생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과 주말·야간집행을 할 경우도 있다.

#### (2) 지역사회에 유익한 봉사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의 숙원사업,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수해복구작업, 산불감시 등 대민지원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3) 보호관찰대상자의 보유기능에 맞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자신의 기능을 활용하여 서민층집수리와 도배 등 기초생활지위, 무료진료, 중증장애인 관광도우미, 푸드뱅크사업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한다(법무부, 보호관찰, 2009).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이정기간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범죄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회를 위해 피해보상의 의미에서 봉사한다는 이중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처벌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직접 책임질 수 있다.

## 마. 수강명령

### 1) 수강명령제도 개요

수강명령은 죄의식이 미약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행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성향에 대해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회피·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자신의 문제인식, 새로운 행동양식 학습을 통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음주운전, 약물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주로 부과된다.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 범죄자에게 주말에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 효시이며 사회내 처우명령의 조건으로 약물·알코올남용 치료, 정신치료, 행동치료 프로그램 참석 등으로 발전시킨다.

### 2) 수강명령 대상 및 기간

<표 8> 수강명령 대상 및 기간

부과근거 (집행유예 또는 보호처분 시 부과)	명령시간	집행근거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시간 내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
소년법 (2008년 6월 시행)	100시간 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200시간 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100시간 내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 2009>

### 3) 수강명령 집행절차

#### (1) 초기면접·검사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알코올중독 판별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도 검사, 결혼만족도 검사, 부부갈등척도 검사 등 실시한다.

## (2)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수강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시간의 부여와 단약, 단주, 폭력상황 회피 등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연속집행을 지양하고 주 1-2회, 1회 3-4시간, 8주 내지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을 원칙이다. 수강집단의 동조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집중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약물별 구분, 성별 구분등 구분 집행한다. 각 프로그램의 구성 인원은 집단의 역동을 위해 12-15명의 소수를 폐쇄집단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개별치료와 종결

매 프로그램 회기마다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및 진행자의 대상자 교육참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프로그램 완료 후 보호관찰관과 진행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4) 집행프로그램

수강명령의 집행 역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을 위한 일반소양, 지능개발, 준법교육, 인성개발, 성격조정, 약습교정을 위한 특수교육, 정신교육, 약물사용 금지를 위한 치료적인 각종 전문교육 등이 있다.

수강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지정된 사회교육시설내지 교화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이나 학습을 받는 것이다.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심성을 계발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다. 중국에 경우는 경미한 범죄자의 교육은 가장 결핍된다. 이 제도는 범죄자의 교육에 관한 면에는 도우는 데 있다.

# 제 4 절 시사점

## 1.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실시사건에 의한 평가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형법, 소년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기소유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소년법이라 할 것이다. 아래<표 9>은 2003년부터 2007까지의 소년대상에 대한 처분유형별 실시사건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의 부과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부 별과처분,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처분의 순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처분별 소년사건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구)소년법에 의한 제1·2호 처분의 증가와 성구매자교육의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기 보호관찰처분((구)소년법상 2호처분)의 경우 1989년에는 부과율이 12.4%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5.8%로 11.4%증가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1995년에는 38.8%로 최고치를 보인 후 1996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 보호관찰처분((구)소년법상 3호처분)의 경우에는 1989년엿 1999년 사이에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20%-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3호 처분을 합하여 살펴보면, 소년법이 개정된 1989년에는 보호관찰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8%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68.3%로 정점을 이루다가 1996년 이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보호처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처분이 다른 보호처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제도가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담당자(보호관찰관)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제도로 평가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89년 소년법 개정이전에는 주로 보호자위탁 혹은 소년원송치 양극화되었던 보호처분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처우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면에서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소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 유형별 실시사건

(단위 :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147,734	148,818	146,895	150,371	165,818
계 (성인)		92,738	100,007	100,510	106,798	119,877
계 (소년)		54,996	48,811	46,385	43,573	45,941
형 법	소 계	4,934	4,734	4,771	3,862	3,317

	선고유예	1	2	4	5	6	
	집행	4,404	4,167	3,802	3,358	2,923	
	유예	397	407	315	202	184	
	가석방	132	158	250	297	205	
소년법	소 계	46,594	41,281	39,119	36,459	39,086	
	보호 처분	제1·2호처분	15,875	13,851	13,611	13,961	16,835
		제1·3호처분	25,513	25,617	24,688	22,054	21,680
	가퇴원	3,206	1,813	820	444	571	
성폭력법	소 계	266	237	221	181	168	
	선고유예	-	-	-	0	-	
	집행 유예	보호관찰부	249	228	211	172	156
		단독명령	17	9	10	9	12
가정 폭력법	소 계	3	1	4	8	10	
	보호 처분	보호관찰부	3	-	3	8	10
		단독명령	-	1	1	0	-
성매매	소 계	-	-	21	19	15	
처벌법	보호 처분	보호관찰부	-	-	20	18	15
		단독명령	-	-	1	1	-
	소 계	-	-	1	3	4	
	집행 유예	보호관찰부	-	-	1	1	1
		단독명령	-	-	-	2	3
기소유예	소 계	3,199	2,558	2,648	3,041	3,341	
	선도위탁	3,199	2,558	2,634	3,109	3,311	
	성구매자교육	-	-	14	22	30	

<출처:보호관찰 통계연보, 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보호관찰의 주요 대상자는 소년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되었으나, 1997년 성인법에 대해 보호관찰이 전면 확대 실시된 이후 성인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을 기점으로 성인대상자가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2. 재범률에 의한 평가

실제로 법무부에서 제공한 통계에 근거해 보호관찰의 재범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효과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보호관찰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보호관찰 종료후의 재범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재범률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제시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2003년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재범률의 통계는 보호관찰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 10>,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년과 성인 모두 재범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의 경우 6개월 미만이라는 단기간에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보호관찰 종류 후(2년) 재범여부

(%)

전체(2,144명)		성인(912명)		소년(1,232명)	
재범자	비재범자	재범자	비재범자	재범자	비재범자
537(25.0)	1,607(75.0)	209(22.9)	703(77.1)	328(26.6)	904(73.4)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 2008>

<표 11> 재범분포에 따른 빈도(보호관찰 종류 후 2년 이내)

단위: 사건수(%)

재범기간	성인	소년	전체
3개월 미만	46(15.9)	84(18.2)	130(17.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5(15.6)	76(16.5)	212(16.1)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8(9.7)	71(15.4)	99(13.2)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9(10.0)	63(13.6)	92(12.3)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38(13.1)	63(13.6)	101(13.4)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1(14.2)	31(6.7)	72(9.6)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1(10.7)	40(8.7)	71(9.5)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10.7)	34(7.4)	65(8.7)
전체	289(100.0)	462(100.0)	751(100.0)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 2008>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소년의 재범률이 2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는 법무부가 제공한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아래 <표 12>에의 전체 재범률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치이다. 특히 재범에 대한 연구가 2003년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의 성과가 긍정적이었음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되었던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소년들에 대한 재범률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자의 재범률이 47.4%, 장기 소년원 처분자의 재범률이 51.3%인 것을 고려하면 보호관찰의 성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소년범죄자 및 재범 현황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31,069	115,210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4
재범자	48,216 (36.7)	41,749 (36.2)	33,814 (34.9)	29,431 (33.8)	25,920 (31.0)	26,450 (29.1)	33,678 (29.1)	31,771 (25.8)

<출처 : 경찰백서, 2009>

###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한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살펴보고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면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대폭 증가하여 소년법의 주요한 처분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은 형벌의 유예 또는 중단을 전제로 실시하게 되지만 선행유지조건인 일정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개별상담자 내지 독지다로서 보호관찰관이 조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기에는 시설내에서와 같은 팽팽한 신경전 대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쓰러트리고 권유하고 세워주는 돌봄이 있다. 이 같은 지도·감독·원호는 대상자들을 사회내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개선·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역할에 해당한다. 보호관찰은 자유형의 폐단을 방지



하여 예방복적을 실질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고, 대상자의 갱생의지를 강화시켜 사회적응을 통한 재범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보호관찰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또한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중국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로, 비록 중국에서의 재범율을 측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소년범에 대한 재범율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 이후의 재범율은 이 제도를 실시하기전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어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의 시스템이 소년사범에 있어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면 지금보다 낮은 재범비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제 4 장 중국비행청소년 보호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 단행법은 「미성년인보호법」과 「예방 미성년인범죄법」만 있고, 소년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은 없다(김재훈, 2007). 또한, 최근에 제정된 소년사법 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범죄의 사후적 처리보다 사전적 예방 대응책에 중점을 둔 종래의 "예방형 소년 정책"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박성일 2007).

2000년 이후에 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중국소년사법제도를 소개한 자료를 찾기 힘들고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몇 개 있는데 그 연구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비행청소년 관련 제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제 1 절 현황

#### 1. 법제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인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예방미성년인범죄법」이 있다. 「미성년인보호법」 제38조의 규정: "범죄미성년자에 대하여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해서 교육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징벌은 보좌한다는 원칙이다." 「예방미성년인범죄법」 제44조의 규정: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행해서 교육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징벌은 보좌한다는 원칙이다." 이규정은 중국 미성년인 범죄형사정책의 총 원칙이다.

#### 가. 중국 소년사법제도의 기본 원칙

중국의 소년사법제도는 1984년에 상해시 장린구에서 소년법정의 확립으로 탄생한 이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청소년 범죄에 중대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소년사

법제도는 UN소년형사사법규범 및 소년사법제도에 관련된 입법과 사법의 실천에 의거하고 있으며 4개의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姚建龍, 2002).

1) 사회와 소년보호의 쌍방보호원칙 (雙保護原則)

“쌍방보호원칙”은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소년사법은 비단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행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며 양자의 유기적인 결합에 노력하고 사회와 소년보호의 통일을 이룬다는 원칙이다.

2) 예방위주, 사법관여최소원칙 (預防爲主、減少司法干預原則)

이 원칙은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소년 범죄의 관리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며, 후에 사법이 관여하여 구제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법이 수단으로 사용함에 지극히 신중하게 관여하고 최대한 사법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소년에게 야기될 수 있는 좋지 못한 영향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교육위주, 징벌보좌원칙 (教育爲主、懲罰爲輔的原則)

이것은 미성년자의 심신의 특징과 범죄의 특징을 확립한 소년사법의 기본원칙이며, 소년사법제도와 성인사법제도의 중요한 구별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소년 범죄의 사건을 취급함에 비행 소년의 교육에 대하여 당연히 핵심 문제를 파악, 비징벌성 수단으로 비행소년을 구제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4) 공동참여, 종합치료원칙 (共同參與、綜合治理原則)

소년사법 제도의 역량에만 의거한다면 청소년범죄와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사법의 전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자원을 발동 및 청소년보호에 공동 참여해야 한다.

## 나. 중국 미성년범죄 형벌제도

중국 「형법」 제 17조에 의하여 ① 만 16세 이상이 죄를 범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②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을 규정해서, 단지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고의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혹은 사망, 강간, 폭발, 마약판매, 방화, 독극물 투하 등 중대한 범죄 형사책임을 진다. 14세 미만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는 처벌을 마땅히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④ 16세 미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의 부모가 혹은 감호자가 가르치길 원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년수용교양제도의 근본 목적은 교육, 위법범죄소년을 구한다." 원칙이 있지만, 소년 수용교양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방위이다. "사회방위의 목적은 사회이익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공공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행정의 영역 속에 범죄 징후의 위험행위를 억제시키고 사회가 범죄로부터 습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夏宗素, 2001). 이것은 소년 수용교양인원이 모두 사회를 위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수용하고 나서 교양을 시키는 목적의 하나는 바로 사회와 분리시키고 사회를 위해하는 행위를 다시 재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방어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다. 집행유예제도와 가석제도

### 1) 집행유예제도

유예제도는 2가지 제도가 있으며 하나는 행정적 제도 또 하나는 사법적 제도다. 또한 사법적 제도는 2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선고유예하고 다른 건은 집행유예다. 중국에서는 사법적 집행유예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인민법원이 구역을 선고하거나 3년 이하 유기 징역을 선고하는 범죄인에게 원판결한 형벌을 유예하고 일정한 기간에 범죄인의 행위와 태도를 고찰한 후에 판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취소하는 상황은 「형법」 제 76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범죄인은 유예기간 안에 공안기관으로 고찰하고 범죄인 있는 회사나 말단 기구와 같이 고찰한 후 「형법」 제 77조 규정하는 상황을 위판하지 않으면 유예기 만료되면 원판결을 집행하지 않는다.

### 2) 가석제도

가석이란 유기도형이나 무기도형을 재판한 범죄인에게 일정한 형기를 집행한 후

범죄인은 규칙을 준수도 했고 교육과 개조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일 수 있고 사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부조건으로 앞당겨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81조에 따라 미성년한테 가석제도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다.

## 라. 사회 내 처우제도

### 1) 사회방교제도(社會幫教制度)

사회방교제도는 중국의 70년대 이래로 출현한 少年犯 교정제도의 일종이며, 하나의 비정규적,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대중성의 사회제도, 중국교정제도의 중요한 보충이 된다. 소위 사회의 교정 교육은 대중의 역량과 사회의 각 방면의 협력에 의지해서 특정의 범위 내에서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비행정처분, 비경제처분이다.

### 2) 지역사회교정(社區矯正)

감금교정과 상대적인 행형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교정조건에 부합되는 범인을 지역사회 내에 두는 것이며, 전문적인 국가기관부터 관련되는 사회단체와 민간조직과 사회지원자의 도움 아래서 확정기한 판결을 내려서, 기한 내에 그 범죄 심리와 행위의 악습을 교정하며,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하는 비 감금 형벌집행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2. 운영측면

### 가. 중국 소년법정의 현황

중국은 전문적인 소년법정이 없지만 일반 인민법원 내에 소년법정을 설립했다. 1984년에 상하이 장저구에서 소년법정을 처음으로 설립한 이래 미성년 형사안건을 전담하여 심리해 왔다. 1994년 말에는 전국 법원 내부에 3,369개의 소년법정이 설립되었으며 소년안건 심판 인원도 10,000여 명이 있다.

중국의 기층법원(基層法院)과 중급법원(中級法院)에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정을 설치하여 미성년인 형사안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고법원(最高法院)과 고

급법원(高級法院)에도 모두 소년법정 지도 팀을 설립했지만 현재 중국의 소년법정은 법원 내의 일개 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설치는 행정구획의 제한을 분명히 받는다. 사법 진행에 있어서도 단일 소년법정이 1년에 처리하는 미성년인 형사안건은 결코 많지 않다. 그래서 심판 형량이 분산되어 있고, 심판에 대한 강화와 제고 및 심판 경험이 불리하다. 또한 현재 중국의 심각한 범죄 상황과 법원 조직 체계는 법원이 미성년인 형사안건의 심판을 업무의 중심으로 삼을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도시와 지역 내에 규모가 이루어지지 못한 소년법정이 현급(縣級) 행정지역에 분산되어 각기 수적(數的)으로 많지 않은 미성년인 형사안건을 처리한다. 실제원인에 따라 소년법정의 법관은 당해 연도의 업무량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타 안건을 맡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년인 형사심판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심판인원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소년법정이 법원심판 업무 중에 처한 지위는 소년법정의 심판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의 미성년인 형사심판제도가 발전하고 완성되기에 극히 불리하다.

## 나. 위법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 수용시설 현황

### 1) 미성년범 관교소 (未成年犯管教所)

「미성년인보호법」 제41조2항 규정 및 「監獄法」 제74조 규정에 인민법원의 “판결로 복역하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성인범과 분리 수감해서 관리해야 한다.”와 “미성년범(未成年犯)은 마땅히 소년관교소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년관교소에 구금한 미성년범(18세미만의 범인)은 “소년관교소(管教所)에서의 복역기간 만기가 만 18세, 단 자연 형기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 2) 노동교양소(勞動教養所)

노동교양은 노동교양대상자(형사책임이 없는 절도나 사기범행을 한 소년, 치안관리법위반 소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함 죄를 범한 소년 등)를 강제로 교육 개조하는 행정처벌조치로서, 공안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수용교양(收容教養)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비행소년, 만 14세 미

만의 중대한 죄(고의살인, 중상, 강도, 방화 등)를 저지른 소년을 1년 내지 3년 (연장하면 4년까지 가능)간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소년을 교양시키는 행정처벌로서,公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중국형법제17조의4, 미성년인보호법제39조).

### 3) 공독학교(工讀學校)

「미성년인보호법」(제18조) 과 「예방 미성년인범죄법」(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한 형태의 학교로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중한 불량행위나 위법 또는 경미한 범죄행위자(노동교양, 소년수용교양,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등학생)를 교육과 구제를 진행하는 교육기구로서, 해당지역 교육국과 公安기관에서 대상자를 심사 허가한다.

## 제 2 절 문제점

### 1. 법제도의 문제점

#### 가. 소년사법제도 없다

1980 ~ 2000년까지 20년 동안 중공 중앙위원회 公安부, 최고 인민법원, 사법부, 국가교육위원회, 공청단(共靑團)<sup>6)</sup> 중앙위원회, 중화 전국총공회(總公會)<sup>7)</sup>, 중화 전국 부녀(婦女)연합회<sup>8)</sup>는 소년 형사사건 처리, 배심원 제도, 소년범의 처벌방법 등을 둘러싼 무수한 법률, 법령, 조례 및 통지를 발표했으나, 이 또한 너무 분산되어 있어 있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현재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 있어서 단행법은 「미성년인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예방미성년인범죄법」만 있고, 소년범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은 없다(김재훈, 2007). 소년범죄의 확정에 관하여는 단지 보통법으로써만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성년

6) 共靑團의 전체명칭은 中國共產主義靑年團이 이고 영어명칭은 China Communist Youth League.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청년단체이다.

7) 中華全國總公會의 영어명칭은 All-China Federation of Labor 이다.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동자 단체이다.

8) 中華全國婦女聯合會는 1949년3월 성립했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여자 단체이다.

인이나 소년범죄를 막론하고 통일된 법정형벌은 동일하다. 다만 형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성년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감할 수 있다. 형량과 형벌에 대한 정죄 혹은 대체 조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모두 통일된 명확한 법률 표준이 없다. 심지어 이미 광범위하게 확정되어 진행 중인 소년법정의 규정도 다만 관련정책의 문건 혹은 법규 및 사법해설 중에만 산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인의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법적 근거와 적용 근거의 미비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미성년인 안건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다.

## 나. 중국 비형벌처벌제도의 법적규정미비

중국형법은 미성년범죄인에게 비형벌 처벌제도를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형법 제37조의 규정 "가벼운 범죄자는 심판을 필요가 없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자에게 사건을 따라서 훈계 또한 잘못을 뉘우치는 서약서 제출, 사과, 손실배상, 혹은 상관 부문은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준다"에 따라서 미성년범죄인 비형벌처벌의 종류가 새로 도입되어 시행했으나, 비형벌처벌제도인 잠완기소(暫緩起訴)<sup>9)</sup>, 사회봉사명령<sup>10)</sup>, 형사화해<sup>11)</sup>를 시행함에 있어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중지된 상태이다(黃歡, 2008).

## 2. 운영측면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외국에서는 소년범의 비행에 대한 원인을 조사할 때는 사전에 비행의 원인 등을 분석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왔지만 중국의 수많은 법원과 소년법정이 소년범죄안건을 심판할 때에는 이런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 나타난 문제로 첫째, 중국의 사회조사는 대부분 비전문인원 혹은 법원의 법관이 진행하는

9) 暫緩起訴란 검찰기관은 원래 고소해야 한 미성년범죄인에게 잠시 고소하지 않은 동시에 검찰기관은 미성년범죄인에게 시한부 시간 주고 그동안 범죄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0)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판결을 받은 미성년범죄인에게 자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나 급부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11) 형사화해란 범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배상 및 사과하는 방식으로 피해인과 화해한 이후 국가기관은 더 이상 범죄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제도이다.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조사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가 반영하는 내용은 겨우 인적 사회성(인격과 사회와의 관계)이므로, 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과학적 평가와 판단이 없고 주관성과 임의성이 강하여 조사 결과가 편파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사회조사보고의 작용은 집중적으로 법정교육에 관하여만 전개되었고, 형벌재량 방면에 있어서는 큰 작용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진행의 혼란이 장기화된 이래로 중국의 미성년인 안건과 성년인 안건은 소송절차 상에서 엄격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미성년인의 신체적·심리적 발전 특징과 위법범죄의 원인·특징 및 규율에 대하여 주의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미성년인이 일차 범죄 후에 소송과정 중에서 바람직한 개정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범 발생률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 둘째, 소송절차의 간단화는 소송증명이 요구하는 절차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 교정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성년인의 안건과 비교해 볼 때 미성년인 안건에 대하여는 범죄 사실을 조사 증명하는 것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미성년인의 인적 성격 특징과 범법 범죄의 길에 들어선 원인을 확실히 조사하여 사법인원들로 하여금 소송과정 중에 '사람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진행 중에 미성년인 안건과 성년인 안건을 동등하게 간주하되, 다만 범죄사실의 조사증명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미성년인 안건 증명 대상의 범위는 축소했다.

## 가. 전문 교정인력 부재하다

중국은 교정기관이 없어서 범죄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징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교정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에 있는 범죄청소년을 교정하는 인력은 주로 경찰과 학교 선생님이다. 경찰은 너무 바빠기 때문에 교정을 못하고 학교선생님도 그 학교의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청소년을 교정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지역사회도 전문적인 교정기관 없고 전문적인 인력도 없다(劉勇, 2007).

중국의 소년교양 집행 장소는 극히 규범적이지 않다. 공안기관이 비준하고 결정한 노동교양과 수용교양의 안건은 논쟁적인 상황에서 자주 당사자와 관계인이 처리방식 혹은 처리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교양 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인은 교육을 받는 과정 중에 안정성이 떨어져 교육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낮다. 또 한편으로는 공안기관이 노동교양 안건을 비준할 때에도 항상 조사증명이 어렵고 사법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만 많이 들고 성과는 없는” 결과를 처리하여 객관적으로 노동교양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중국의 오래 된 청소년 보호제도는 여전히 징벌의 특징이 농후하며, 구체적인 실시 방식은 “사회분위”를 입법 사상의 기초로 삼는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유형은 이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예방 작용에서도 오히려 비행청소년으로 하여금 역반심리(逆反心理)를 일으켜 그 불량행위를 가중시키고 있다.

#### **나. 비행청소년 교정에 대한 인식부족**

2000년 이후 여러 논문에서는 특히,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장했던 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이 없었다. 이는 중국에서 범죄청소년에 대한 재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소년사법제도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법관, 교정관,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

# 제 5 장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방안

## 제 1 절 법제도

### 1. 소년사법제도 확립

소년사법제도의 기본 이념은 범죄 소년을 미성숙한 인격으로 간주하여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성년인 처벌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범죄소년에 적합한 교육 체계를 세워야만 비로소 범죄소년을 사회에 올바르게 귀속시킬 수 있다.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법에 의거하는데, 독립적인 소년법이 없다면 곧 소년사법제도가 없는 것이다. 소년사법제도의 소년법과 성년인 형사 법률에서 독립된 소년법의 건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년사법제도가 지금까지 건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중국 소년사법제도 건립의 관건은 부분적으로 건립이 가능한 소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 소년법을 제정할 때에 미국 일리노이 주나 일본 등의 지방법과 국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단일형의 소년법 제정에 앞서 조직법, 실체법, 절차법의 합일을 채용하는 형식이 소년법원에 대한 조직 · 구성 및 직권 · 관할범위, 그리고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 심판절차 및 집행 등의 내용이 규정을 만들어내어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를 가급적 빨리 확립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비행벌처벌제도 체계화

미성년인범죄 비행벌처벌제도의 적용 중에 존재하는 혼란 상황을 바로잡아 그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려면, 먼저 각 항의 입법자원을 정합하여 미성년인범죄 비행벌처벌제도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는 소년사법제도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이어야만 하고, “사회와 소년 보호의 쌍방보호”, “예방위주 사법관여최소”, “교육위주 징벌보좌”, “공동참여 종합치료”의 기본원칙을 따라야만 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비행벌처벌조치의 종류이다. 형법 규정의 훈계, 잘못을 뉘우친다는 서약

서 제출의 책임 부과, 사과·사죄, 손해배상, 주관 부문에 건의하여 행정처벌 혹은 행정처분을 주는 등의 종류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시야를 넓혀 세계를 향하여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야 한다. <<북경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실제 상황과 사회·문화·법률전통을 결합하여, 다음의 비형벌처벌조치의 증설을 고려할 수 있다.

## 가. 노동배상

즉 범죄내용이 비교적 가볍지만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재산손실을 입힌 미성년범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은 그가 피해자에게 직접 노동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노동소득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노동배상조치는 이전의 경제배상이 가족의 부담으로 미성년범 본인은 심각하고 절실하게 감수하기 어려웠던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범의 노동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여 징벌과 교육개조를 다 같이 중시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 나. 보호관찰처분

즉 환경의 영향 혹은 교우관계의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범죄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미성년범죄인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 활동장소, 교우와 왕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고, 미성년범죄인에게 정기적으로 학습과 생활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관찰처분은 외부의 불량요인이 미성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격리시키고,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유리하다.

둘째로, 적용주체이다. 중국의 형법은 인민법원이 비형벌처벌조치 적용의 유일한 주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미성년범죄인의 주체 특성 및 형사심판 절차 분류의 사법추세와 회복성 사법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적용주체를 검찰기관과 공안기관까지 확대해야만 한다.

셋째로는, 적용대상이다.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은 범죄내용이 경미하여 형벌 판결이 필요치 않은 미성년인들이다.“범죄내용이 경미함”의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조작의 불규범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로는, 적용절차이다. 하나의 법률제도는 그것이 운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명확한 절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절차성은 법률제도의 양성적 운행의 필연적 요구이다. 실제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미성년 범죄인에 대하여 비형벌처벌조치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명확한 절차 규범의 인도가 결여되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엄격한 적용절차의 규정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규범은 비형벌처벌조치의 수사, 검찰, 재판 단계에서의 적용을 지도해야 한다.

## 제 2 절 운영측면

중국의 소년관교소가 채택한 집중감금, 집중교양의 교정조치는 미성년인의 교육구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의를 구비하고 있다. 단, 집중수감, 집중교양이 조성하는 교차감염과 미성년인의 건강한 성장에 대하여 초래하는 부정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다. 형사 사법 정책의 각도에서 고려할 때 미성년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려면, 그 중점은 이상적인 수감소의 건립에만 두는 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미성년인이 수감소에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마땅히 고려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에서 개조를 해야 한다.

중국 청소년 보호관찰의 건립에 직면하여 사법자원지구의 분배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각 성·시 및 지구에 모두 청소년 보호 관찰소를 설치한다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원의 배치와 준비 문제도 상당히 곤란하다. 단기간 내에 대량의 완전히 청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할 각종 사법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의 건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 1. 사법부 내에 보호관찰소를 설치

중국 사법부 하에 수많은 향, 진, 사법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법률을 이해하고, 또한 평소에 이웃주민들과 법률분쟁을 해결하며 변호 혹은 소송대리의 일을 행한다. 이웃주민과 사법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정이 융합되기가 더욱 쉽다;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법률제정은 모두 보호관찰부문과 감옥을 함께 하나의 부문

관리에 속한다. 중국은 사법부가 감옥기구 및 형벌 집행을 관리한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부문도 마땅히 사법부에 종속되어야 한다.

각 현, 시, 구 사법국은 보호관찰과를 설립하고, 보호관찰과는 각 향, 진 사법소에 한 사람의 인원을 지정하여 보호관찰과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 담당자는 각 향, 진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하여 조사 관찰 사무를 맡고 관찰보호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전문적으로 지급하는 조사 관찰 수당을 받는다. 조사 관찰관은 현지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적당한 사람 수의 관찰보호를 지원자를 두는데, 관찰보호지원자의 관찰보호수당은 관찰보호를 받는 사람이 법원판결의 관찰보호금<sup>12)</sup> 중에서 지급한다.

## 2. 보호관찰과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감독 보호관찰대상은 형을 받은 사람이 교정기관으로부터 석방 후에 가족관계 및 기타 사회사무 등을 하도록 협조한다. 사회적 범죄 예방의 사무를 촉진한다. 보호관찰관의 일을 지도한다. 보호관찰관 및 관찰보호 지원자를 훈련한다. 보호관찰사업을 선전하고 추진한다.

## 3. 보호관찰관의 자격 구성

보호관찰의 전문직 인원은 각 지역 사법국 보호관찰과가 각 향, 진 사법소 혹은 기타 경로에서 선발 후에 사법소로 파견하여 보호관찰 사무를 담당한다. 선발된 보호관찰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법률,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혹은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동등의 학력을 구비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2년 이상의 사회 특수직 혹은 관찰 업무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생리, 심리 및 정서 변화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갖출 것 네 번째로는 가정문제 처리와 사회자원 운용의 능력을 갖출 것 다섯 번째로는 반드시 그 관찰구역 내의 각 기관 및 지역민의 풍속 정황에 익숙할 것 여섯 번째로는 전문적인 관찰보호직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

12) 한국의 벌금제도 같은 것이다.

## 4. 보호관찰의 종류와 내용

보호관찰이란 범죄자 및 불량소년을 개조하여 그로 하여금 사회로 복귀하고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보호관찰은 완전한 가석방 제도와 집행유예로써 중심을 삼는다. 보호관찰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중국 처분의 보호관찰이다. 이것은 일종의 제재 조치이다; 둘째는 집행유예 형식의 보호관찰이고 집행유예 선고와 집행유예 행형의 보호관찰에 부속된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 선고 형식의 보호관찰은 영미법 계통에서 발전된 제도이고, 집행유예 행형식의 보호관찰은 대륙법 계통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셋째는 가석방형의 보호관찰이다; 넷째는 형 만기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다.

보호관찰은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지도·감독, 원호, 응급구호,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 가. 판결전조사

판결전조사는 형사소송절체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등 사회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이나 범죄자처우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양형과정과 처우과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판결전조사의 내용은 범죄인의 성격, 가정환경, 성장과정, 경력, 전과관계, 교우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한 양형결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환경조사

환경조사는 소년수용자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환경조사를 의뢰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

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다.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 지도와 감독의 방법은 관찰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등이다.

한국 보호관찰을 보면 일반준수 사항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의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5) 기타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의 5가지이다.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사실·범행동기·사회환경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일반 준수사항 이외에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 준수사항은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이행할 것의 5가지이다.

## 라. 원호, 응급구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힘에 있어 성행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숙소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환경개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



제원도의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원호를 실시한다. 그밖에도 보호관찰대상자가 부상, 질병 등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다.

#### 마. 보호관찰의 경비 출처

비록 유럽, 미국, 한국 등의 국가에서 건전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비지출과 인력수급의 문제이다. 한국은 현재 보호관찰 조직의 예산이 교도소 예산의 1/33, 대상자 1인당 소요경비도 교도소의 재소자 1인당 수요경비의 1/17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윤재복, 2007). 필자는 중국의 보호관찰제도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도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적합한 관찰 인원이 적다; 둘째는 경비가 부족하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매년 대학 졸업생 중에서 시험 형식으로 융통성 있게 채용할 수 있고,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상관 배경지식을 구비한 사람들과 보호관찰 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유관장소에서 2년 동안 실습과 견습을 하게 한 후에 합격하면 관찰관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직 인원에 대해서는 훈련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점차로 인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경비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법원판결 시에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 경비를 받아 법원이 사건 경위, 개인이나 가정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수납해서 그 비용을 사법 부문에 이관하여 보호관찰 특별비용을 형성하고, 동시에 국가도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회지원자도 기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출처로부터 나온 경비는 사법부가 통일하여 각 지역 사법 청, 국에 지급하고, 보호관찰 사업을 회복하고 보호관찰관과 기타 사법 행정인원의 동등한 대우 수준을 확보하는 데에 전용한다. 관찰보호 지원자의 대우에 대하여는 주로 보조금 방식을 채택한다.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비행청소년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행위가 흉포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재활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비행청소년 처우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중국의 비행청소년 재활에 필요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즉, 보호관찰제도가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발전하여 왔으며, 비행청소년에게는 어떻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가와 한국에서는 실제 어떤 모습으로 운용되는 가를 제도적인 부분과 프로그램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제 한국의 보호관찰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소년사법제도 시스템에는 통일된 소년사법제도가 부재하다. 즉 법률 등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책임 있고 체계적인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미성년인이 일차 범죄 후에 소송과정 중에서 바람직한 개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송절차의 간단화는 소송증명이 요구하는 절차가 엄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소년범죄에 대처하는 전문 교정인력의 부족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범죄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징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교정효과가 없다.

셋째, 중국내 비행벌처벌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법적규정이 미비하여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비행벌처벌제도인 잠완기소(暫緩起訴), 사회봉사명령, 형사화해를 시행함에 있어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넷째, 소년사법제도내에서 보호관찰의 역할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방국가에서는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있었다.

다섯째, 비행청소년을 감독하고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형법, 소년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기소유예 등을 들 수 있으며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면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대폭 증가하여 소년법의 주요한 처분 대상이 되었다. 보호관찰처분이 다른 보호처분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제도가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담당자(보호관찰관)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제도이다.

여섯째, 한국의 보호관찰제도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자교육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 제 2 절 시사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중국의 비행청소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프로그램차원으로 나누어 제언하고자한다.

### 1.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첫째, 통일된 소년사법시스템 정립한다.

중국의 「미성년인보호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청소년이 위법범죄를 했을 때 성인보다 더 배려와 보호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하며, 감화와 구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갈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소년법」에 의하여 채우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증가성을 고려할 때 일관적이고 다양한 처우를 하기위하여 한국의 소년법과 같은 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비행벌처벌제도의 법적근거 마련한다.

한국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비행벌처벌제도의 법적근거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소년법」이다. 중국의 잠원기소제도(暫緩起訴制度)와 비슷한 한국의 기소

유예제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많아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잠원기소제도, 사회봉사명령, 형사화해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비행벌처벌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비행벌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감화, 구제"원칙에 따라서 중국의 비행벌처벌체계를 구축 보완해야 한다. 비행벌 처벌체계는 응당 소년사범의 주요 구성부분이 되므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적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과 조치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감독을 전제로, 교육인도를 주요조치로, 교육감화를 핵심으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벌 처벌체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소년범죄처리 전담인력의 양성한다.

중국의 소년사범제도 중의 경찰, 검찰관, 교정관 등에서 소년범죄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경미한 사건을 경찰과 학교 교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담하지 않으므로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정인력을 전문화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 2. 프로그램차원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수용시설에서의 교정프로그램 운영한다.

중국에서 미성년이 범죄를 하였을 때 수용교양하는 기관은 未成年犯管教所(미성년범관교소)와 노동교양소, 공독학교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소년원과 비슷한 노동교양소의 경우에는 행정처벌로서公安기관에서 수용교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이 범죄를 하였을 때 수용교양하는 기관에서는 미성년의 특성과 장래를 고려한 전문적인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호관찰프로그램 도입 필요하다.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제도는 이미 서방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중국도 개방체제를 채택하여 서방국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

고 있으며, 특히 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영향을 받아 다양한 범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시스템은 체계화가 되어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년사법시스템에 있어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프로그램 중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조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명령제도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서는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현상을 대처하기위하여 소년사법시스템에 소년의 나이를 전에는 12세부터 감독할 수 있는 것을 10세로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부분은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중국의 소년범죄 중에서 나이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공안이나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정프로그램에 사회복지 개념 도입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보면 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교정복지분야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였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도 사회복지실천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이 거의 없어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개념을 가진 전문인력이 소년사법제도에 개입하여 소년에 대한 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보호관찰프로그램에 있어 비행소년 교정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하는 것에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제언들은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중국의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재활에 있어 사회복지측면에서 처음으로 살펴보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범죄를 감소하기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개입하여 사회내 처우의 중요성이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본다.

### 3. 본 연구의 제한점

첫째, 중국에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한국의 제도와 통계를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둘째, 한국의 범죄백서와 같이 중국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공식통계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전체 규모를 분석할 수 없었다.

셋째, 중국이 너무 커서 운영실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인용한 자료가 중국내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한계가 있다.

넷째, 중국의 사회복지분야 중 청소년관련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에 한계가 있었다.

## 참고문헌

### <중국문헌>

- 郜金泰(2008), “完善我國未成年人犯罪非刑罰矯正制度的構想,” 「河北法學」第12期.
- 黃歡(2008), “我國未成年人犯罪非刑罰處罰制度研究,” 湘潭大學, 碩士論文.
- 康均心·李娜 (2005), “我國未成年人犯罪刑罰執行制度研究——兼論社區矯正制度,” 「現代法學」2005年06期.
- 劉勇 (2007), “對我國非行青少年適用保護處分的構想,” 吉林大學 碩士論文.
- 聶穎 (2005), “非犯罪化研究,” 四川大學 碩士論文.
- 夏宗素(2001), “勞動教養制度改革問題研究,” 「中國司法」第4期.
- 姚建龍(2002), “少年司法制度基本原則論,” 「山西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第3期.
- 尤麗娜(2006), “從日本的保護處分制度看我國的少年教養制度,” 「青少年犯罪問題」第2期.
- 曾燕波(1997), “城市青少年犯罪特徵分析,” 「當代青年研究」第6期.
- 張偉(2009), “当前我國青少年犯罪原因及預防對策研究,” 鄭州大學, 碩士論文.
- 세계3대 공해, 三峽晚報 2008,3  
<http://news.sxxw.net/html/20083/7/180123.shtml>

### <외국문헌>

- 김순자(2007), “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1988), “보호관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 김용우(1988),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김응겸(2002),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김재훈(2007), 「중국의 소년사법제도」 한국보호관찰학회 pp.150-163
- 박성일(2007), “현대 중국에 있어서의 소년비행과 법,”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pp.3-6
- 박경래(2007), “보호관찰조직진단 및 합리적 인력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7법무부용역연구과제 p.66-68
- 박종철(2007), “청소년 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종대(2003), “형사정책,” (제5전정판) 홍문사.

- 신석환(2009),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창언(1979),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해외과건검사논문집 pp.103-104
- 송광섭(1996), 형사정책, 서울: 大旺社
- 이명은(2008), "각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철(2002), "가퇴원전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주(2007),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한(2009), 「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2009년 춘계 학술대회 학술자료집.
- 이태언·신석환(2005),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 윤재복(2007),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혜욱(2009), "소년 보호관찰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pp.157-158.
- 정영석(1970), 「소년보호와 소년법」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pp.28-32.
- 정주영(1988),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준현(1993), "보호관찰에 관한 고찰(하)" 교정협회, 교정 pp.18-38.
- 차정일(1986), "일본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과건검사연구논문집 제4집.
- 최옥채(2000), "교정복지론," 제2판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한강택(1994),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풍남(2009),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 완(2001), "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大谷實(2000), [日] 黎宏 譯. "刑事政策學" 北京: 法律出版社.
- Howard Abadinsky(1999), Probation and Parole, 7th ed. Prentice Hall. pp.130-131
- N. S. Tunasbeff (1971), 高橋正已 譯, "One Hundred Years of Probation" 前野書店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사회복지	학 번	2008771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추현	한문: 鄒弦	영문: ZOU XIAN		
주 소	광주광역시 지산동 464-4번지 103호				
연락처	E-MAIL : zouxian1982@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 중국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bation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ts in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O )    반대(    )

2010년 8 월 25 일

저작자: 추현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